

행위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‘신길건영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’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 지역 지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3월 5일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

1. 행위제한 개요

1) 제한지역 및 제한기간

사업명	위치	면적	제한기간
신길건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	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364번지 일대	23,047㎡	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

2) 제한대상 행위 : 「건축법」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
전유부분 분할

3) 제한사유 : 우리 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
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함

4) 관련도면 : 지형도면 참고

2. 안내사항

기타 문의사항은 영등포구 재건축사업과(☎02-2670-388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지형도면

- 신길건영아파트

